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0345 판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경석, 임동권, 정소라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나. 16,678,30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1,750,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 법원 C)에서 이를 매수하여 2020. 1. 1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이는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구조로 기둥, 벽, 지붕의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2021. 6. 22.자 감정결과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6.부터 2021. 6. 30.까지의 지료는 16,678,300원이고, 2020. 7. 1.부터 연간 지료는 11,750,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6,678,3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1,750,3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각, 판사 서진원, 판사 여동근

별지**부동산 목록**

1. 태백시 D 전 1,079㎡

2. 태백시 D 전 1,07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460.76㎡

2층 142.82㎡

3층 237.94㎡

지하층 77.64㎡

끝.

